#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50

발의연월일: 2022. 2. 11.

발 의 자:이종배·金炳旭·김선교

김성원 · 성일종 · 윤주경

이채익 • 조명희 • 추경호

태영호 · 홍문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7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소년"을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4세"를 "12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고) ①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u>소년</u>	1 <u>소년(「특정강력</u>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
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	<u>12세</u>
인 소년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